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925호 2015년 3월 9일(월)

공 고

○ 2015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2015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

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「주택법」 제43조 및 「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」에 의거 2015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03. 09.

속 초 시 장

1. 지원대상

- 대상단지 : 총 125개 단지/21,987세대
 - 10년 미만 단지 : 보안등 전기요금
 - 10년 이상 단지 : 보안등 전기요금, 시설보수

구 분	계		10년 미만		10년 이상	
	단지수	세대수	단지수	세대수	단지수	세대수
계	125	21,987	14	3,597	111	18,390
아 파 트	71	20,421	12	3,565	59	16,856
연립주택	54	1,566	2	32	52	1,534

2. 지원금액 : 305백만원 (* 시설물 유지보수 250, 보안등 전기요금 55)

3. 지원기준

규 모(세 대 수)	지원비율(%)	지원상한액
100세대 미만	사업비의 70%이하	1천만원
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	사업비의 60%이하	1천5백만원
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	사업비의 50%이하	2천만원
500세대 이상	사업비의 50%이하	3천만원

* 총사업비 : 지원금액+자부담금액

*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사업은 심의를 거쳐 90%까지 지원할 수 있음

4. 지원항목

- 가.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
- 나.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
- 다. 경로당 유지보수
- 라. 단지내 보·차도 등의 유지보수
- 마.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(주거용 건물외 매립된 시설물에 한한다)
- 바.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
- 사. 도색 및 방수(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) ⇒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공동주택
- 아. 단지내 재난·재해 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(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)
- 자.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시설물
 -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
 - 시급히 보수·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
 -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
※ 유의사항

-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.
- 다만, 보조금 지원대상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.

5. 분야별 지원기준

가.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

-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나.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

-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,

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○ 보안등의 전기요금

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: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×90%
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: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(갑)의 금액을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(월/W당 37.5원)× 12월×보안등 등수×90%

다. 경로당 유지보수

-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.

라. 단지내 보·차도 등의 유지보수

- 단지내 보·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.

마.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

- 주거용 건물외 매립된 상·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.
-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.

사.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

-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
-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

6. 세부추진일정

- 가.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: 2015. 3. 9
- 나. 지원신청서 접수 : 2015. 3.9 ~3.20
- 다. 현지조사 : 2015. 3.23~3.27
- 라.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: 2015. 4월초
- 마.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: 2015. 4월초

7. 지원신청

- 가.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: 2015년 3월 20일 한
- 나. 신청적격자

-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
공동명의로 신청
-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는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
명의로 신청
-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가 연명·서명하여
선정한 대표자 2인으로 신청

다. 제출처 :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

라. 신청시 제출서류

- 1)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- 2)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
(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)
- 3) 사업계획서(아래의 사항을 기재함)
 - 가)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
 - 나) 사업의 목적과 내용
 - 다)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
 - 라) 자기자본 부담액
 - 마) 지원 사업기간
 - 바)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
 - 사)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, 사진 등 관련 서류

8. 기타 자세한 내용은 「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」 및 「속초시 공동주택
지원조례 시행규칙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
(☎ 033-639-27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1호]

공동주택 지원 신청서

신청자	공동주택명		동 수	
	주 소		세대수	
	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		준공일	

신 청 내 용

구 분	개요(목적, 내용, 사업기간)	총소요예산/ 자기자본부담액	비 고
계			
기 타			

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(인)

관 리 사 무 소 장 (인)

속초시장(건축디자인과) 귀하

구비서류 : 1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
2.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서 내역서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